大田直轄市勤勞青少年生活館(賃貸아과트)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番號 397

提出年月日:1994.3

提 出 者:大田直轄市長

## 1. 提案理由

勤勞靑少年生活館(賃貸아파트) 位置의 地番이 變更되어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, 生活館 入住 保證金 및 月 賃貸料를 關係 法令및 勞動部 指針에 의거 現實에 맞게 改正하여는 것임.

## 2. 主要骨子

- 가. 勤勞靑少年生活館(賃貸아과트) 位置의 地番을 大田直轄市 大德區 大禾洞 山 3 5 番地에서 大田直轄市 大徳區 大禾洞 3 - 3 番地로 정함(案 第2條)
- 나. 勤勞靑少年生活館(賃貸아과트) 入住保證金및 月 賃貸料 金額을 男女雇傭平等法 施行 規則 第8條 第1項 의 規定에 의거 勞動部長官의 基準을 參考하여 調整하고, 生活館 入住希望 人員이 점차 減少되어 감에 따라 現行 世帶當 入住人員 區分없이 個人別로 均等賦課하던 月 賃貸貿料를 世帶 單位로 賦課 하여 世帶當 入住人員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可能한 與件에서 入住者의 希望에 따라 安樂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른 賃貸料도 世帶當 入住人員에 比例하여 個人別 負擔額 이 調整될수 있도록 정함(案 第6條중 별표)
  - 入住保證金: 個人別 8,400원(5人 基準 世帶當 42,000원)---->世帶當 44,000원(5人 入住 基準 1人當 8,800원)
  - 月 賃貸料: 入住者 個人別 4,200원(5人 基準 世帶當 月 21,000원)----> 世帶當 22,000원 (5人 入住基準 1人當 月4,400원)으로 정함.

# 3. 參考事項 (關聯法規)

#### 가. 住宅賃貸借保護法

第7條(借賃등의 增減請求權) 約定한 借賃 또는 保證金이 賃貸住宅에 관한 租稅·公課金 기타 負擔의 增感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感을 請求할 수 있다. 그러나 增減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率을 초과하지 못한다.

#### 나. 住宅賃貸借保護法拖行令

第2條(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)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(이하 "차임등"이라 한다)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(생 략)

#### 다. 男女雇傭平等法

第13條(福祉施設의 說置) ①(생략)

②勤勞女性을 위한 第1項의 福祉施設의 基準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 部長官이 정한다.

#### 라. 男女雇傭平等法施行規則

第8條 (공공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)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복지 시설의 기준은 별표3 시설운영 기준을 별표4와 같다.

(별표 4)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

임대료 : 임대료 및 입주보증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#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(임대아파트)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(임대아파트)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대화동 산 3의5번지"를"대화동 3의3번지"로 한다.

[별표] 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 별 표 )

# 생활관(임대아파트) 임대료 기준

구 분	급 색	기 준
보 중 급	44,000 원	세 대 당 부 담 액
임 대 료	22,000 원	세대당 월부담액
기타 공공요금 (공동사용 기타 공공요금 등)	1.	호별 입주자 균등 징수 (총 사용량에 대한 입주자별 균등징수)

## 비고

\* 임대료는 세대별(큰호실 13,200원, 작은호실 8,800원)부과하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입주 희망자가 직어 세대별 3명 미만 입주시는 개인당 8,800원씩 부과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**									
	현	행	Б		7	1 3	안		
제2조(위치) 생활판(임대아파트)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 산 3의5번지에 문다.			제2조(위치)						
(별표) 생활관(임대아파트) 임대료 기준			(별표) 생활판(임대아파트) 임대료 기준						
구 분	금 액	기 준		7 .	분	급 액	7)	준	
보 중 급	8, 400원	1인당 부 담	엑	보 중	<b>급</b>	44, 000원	세대당	부담액	
임 대 료	4, 200원	1인당 월부담	액	임 대	豆	22,000원	세대당	월 부담액	
기타공공요금		호별입주자균등	징수	기타공	동요급		호별입주기	아 균등징수	
(공동사용		(총사용량에 대학	Đ	(공동사용			(총사용량	에 대한	
기타 공공		입주자별 균등기	(수)	기타	몽공		입주자별	균등 징수)	
요금등)		S FACE STANDARD STAND		요금등	)	-			
	1			터 ※ 임미	고	세대별(큰3	13,200	원. 작은	
					호실 8,800원)부과하되 입주자의 경제적				
, , , , , ,				부담을 감안하여 입주희망자가 적어					
* *			세대별 3명 미만 입주시는 개인당 8,800						
					원씩 부과한다.				
	,	*						n e	